

## 6. 遊休地調查業務處理指針

### I. 總 括

#### 1. 目 的

이 指針은 國土利用管理法 第21條의 10의 규정에 의한 遊休地調查 및 決定을 적정하고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한 基礎資料의 蒐集·調查에 관하여 필요한 지침을 제공함에 그 目的이 있다.

#### 2. 調查機關

調査는 市長·郡守 또는 區廳長의 책임 하에 실시하되, 서울특별시장·직할시장 및 도지사는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.

#### 3. 調查段階

△ 조사대상지역의 확인

△ 일정면적 이상 일단의 토지를 추출

△ 토지이용도의 확인

△ 소유자 및 보유기간의 확인

### II. 調查對象選定

#### 1. 調查對象의 確定

土地의 所有者가 당해 土地를 취득하거나 당해 土地에 대하여 地上權 기타의 권리 를 가진 자가 그 권리를 설정한 후 2年 이 경과된 土地(法 祭21의10 第1項).

#### 2. 調查地域 確認

##### 가. 調查對象

△國土利用計劃, 都市計劃 및 기타 土地의 利用에 관한 계획상 그 土地나 그 土地를 포함한 주변지역에 있어서 계획적인 土地利用의 증진을 위하여 당해 토지의 이용이나 개발을 특히 촉진할 필요가 있는 경우

##### • 都市計劃區域

都市計劃이 수립되어 용도지역별로 지정된 용도지구·구역의 지정목적에 적합하게 利用 또는 開發할 수 있는

여건이 조성되고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土地를 말한다.

#### ① 居住地域

가로망, 상하수도, 전기·통신시설 등 도시기반시설이 정비되어 있고, 당해 토지주변의 주택 등 건축상황과 생활편의시설 등으로 보아 住宅 등 건축물을 건축하여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큰 土地

#### ② 商業地域

가로망, 상하수도, 전기·통신시설 등 도시기반시설이 정비되어 있고, 당해 토지주변의 상업시설 및 업무용 시설의 이용 상황 등으로 보아 상업 및 업무용 시설을 건축하여야 할 필요성이 매우 큰 土地

#### ③ 工業地域

가로망, 용수시설, 전기·통신시설 등 공업기반시설이 정비되어 있고 당해 토지주변의 공장설치 상황 등으로 보아 공장 또는 공장이용자를 위한 건축물을 건축할 필요성이 매우 큰 土地

#### ④ 綠地地域

生產綠地地域：田, 塔 등 농경지로 농작물을 경작 또는 재배하지 않고 있거나 농지보전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고 있는 수확 또는 재배기준 이하로 이용되고 있는 土

地保全綠地地域 및 自然綠地地域：

山林法에 의하여造林計劃이 수립되어 있어 조림이 되어야 한다고 보는 土地이나 조림을 않고 방치하고 있는 土地

#### ⑤ 用途未定區域

都市計劃施設 決定이 된 土地 중 公共機關이 아닌 者가 설치하기로 계획된 土地로서 그 계획대로의 개발이용이 시급한 土地

#### • 非都市計劃區域

國土利用計劃에 따른 用途地域譬如 다음의 요건에 해당하는 土地

#### ② 聚落地域

當該 地方自治團體에 의하여 该 지역 개발계획이 수립되어 용도지역이 세분되거나, 宅地開發促進法 第3條에 의한 宅地開發豫定地區 또는 工業配置法 第16條에 의한 誘致地域으로 지정되어 개발계획이 수립되고, 그 계획에 따라 道路·上下水道 및 전기·통신시설 등 생활편의시설이 완비되고 居住生活을 위한 시설의 설치가 시급한 土地

#### ② 耕地地域

農地의 保全 및 利用에 관한 法律 第2條에 의한 農地 중 동법 第8條에 의한 市·郡·區의 장에 의하여 農地所有者 또는 利用者가 誠實 耕

作 지시를 받은 農地 또는 同法 第 10條의 代理耕作 對象인 農地로서 이를 이행하지 않고 있는 農地  
宗旨擴大開發促進法 第7條에 의한 開發促進地域 또는 小規模開發 對象地域으로 決定 告示되고 개간이 완료되어 경작할 수 있는 農地로서 耕作하지 않고 있는 農地

#### ③ 山林保全地域

山林法 第11條의 規定에 의하여 영림계획이 인가되어 영림계획으로 정한 事業要件에 따라 시업의무로 르 이행하지 않고 있는 土地  
山林法 第21條에 의하여 山林廳長이 指定開發地域으로 지정한 토지로서 개발이 시급한 土地

#### ④ 工業地域

工業配置法 第16條에 의한 誘致地域과 地方工業開發法 第2條에 의한 공업개발 장려지구 및 產業基地開發促進法 第5條에 의한 產業基地開發區域으로 指定되어 道路, 上下水道 등 工業既刊施設이 완전히 정비되어 공장의 입주와 가동이 가능한 土地로서 工業誘致計劃 또는 開發計劃에 의하여 공장의 입주가 시급히 必要한 工業地域

#### ⑤ 觀光休養地域

觀光進興法 第23條에 의하여 觀光

地로 지정되어 觀光地造成計劃이樹立되었거나, 觀光地의 基盤施設이 완비되어 觀光宿泊業者 또는 觀光客 利用施設業者가 施設을 設置할 必要性이 時急한 土地

#### ⑥ 開發促進地域

國土利用管理法에 의한 開發促進地域의 細部開發計劃이 수립되어 用途地域이 세분되거나, 宅地開發促進法 第3條의 規定에 의한 宅地開發豫定地區 또는 工業配置法 第16條의 規定에 의한 誘致地域, 草地法 第6條의 規定에 의한 草地造成地區, 農地擴大開發促進法 第7條 및 이 規定에 의한 開發促進地域으로 지정되고 道路·電氣·通信 등의 기반시설이 정비되어 指定된 地域·地區의 目的에 適合한 施設을 設置할 必要性이 시급한 土地

#### 나. 調查除外地域

△國土利用計劃, 都市計劃 등 土地利用에 관한 計劃이 수립되지 않는 地域 및 用途地域·地域·區域 중 保全하여야 할 地域

△軍師施設保護區域 등 關係法令에 의하여 土地의 利用·開發이 制限되거나 一般의 出入 등이 統制된 地域

△產業基地開發區域, 宅地開發豫定地區,

- 電源開發事業豫定區域 等 關係法令의 法定節次를 거쳐 지정된 地域·地區·區域으로서 公共機關에 의한 開發이豫定된 地域
- △國家·地方自治團體의 計劃에 의하여 國家·地方自治團體 또는 政府投資機關의 先行投資나 先買가豫定된 地域

### 3. 一定面積 以上 一團의 土地抽出

- 가. 一定面積 以上의 一團의 土地
- △「一定面積 以上의 一團의 土地」는 동일 所有者의 土地面積을 意味한다.
- △공유·총유·합유의 경에는 單獨所有로 본다.
- △面積要件의 該當與否를 判斷하는 基準日은 當該 土地에 대한 調査日로 한다.

나. 一定面積 以上의 土地

△一定面積

구 분		면적(m <sup>2</sup> )
도시계획 구 역	녹지지역, 공업지역	1,000
	주거지역, 상업지역, 지역미지정구역	660
도시계획 구 역 외	일반토지	1,500
	농 지	10,000
	임야·토지	20,000

- △一團의 土地
- 일단의 土地는 地形·土質 및 土地利

用狀況으로 보아 相互隣接하여 物理的인 一體性을 구성하고 있으며, 土地利用上 개개의 土地가 아닌 全體로서 하나의 用途로 利用 가능한 土地를 말하며, 莓지와 지목은 考慮하지 않음.

- 土地利用上 일체로서 利用하는 것이 가능하다고 認定되는 限度로 소하천 등에 의하여 分단되어 있는 경우라도 일단의 土地로 認定할 수 있다.
- 일단의 토지의 인정은 당해 토지의 규모, 土地利用現況, 土地利用水準 등과 周邊地域의 土地利用狀況 등을 충분히 比較·檢討하여 社會通念에 따라 판단한다.
- 一團의 土地中一部가 未利用 또는 低利用되고 있는 경우에는 未利用 또는 低利用되고 있는 面積만을 對象으로 判斷된다.

### 4. 土地利用度 確認

- △未利用 土地
- 地上定着物이 없는 土地
  - 各種 開發計劃에 따라 造成된 土地를 分讓받고 分讓 目的대로 利用하지 않은 土地 등 各種土地利用에 관한 計劃에 의한 用途에適合하게 住居用·商業用·工業用으로 利用하고 있지 않

## 는 土地

### △低利用 土地

- 建築物이 存在하는 土地라 하더라도 建築物의 構造 또는 工法 등으로 보아 明白히 假說이거나 一時的인 建築物에 不過하다고 認定되는 土地
- 周邊地域의 동일 또는 類似用途의 土地利用·使用·管理狀態와 비교하여 利用度가 현저히 낮아 利用·開發되어야 할 土地
- 地上建築物의 整備水準, 使用頻度, 管理狀態 등 제반 利用度로 보아 周邊地域의 同一 또는 유사用途의 紙上建築物의 利用度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土地
- 建築物外에 生產施設·設備나 裝置 등과 工作物이 있는 경우에는 工作物의 整備水準, 使用頻度, 管理狀態 등이 周邊地域의 同一 또는 類似用途의 工作物에 비하여 현저히 낮은 土地
- 地上定着物과 土地와의 比率  
地上定着物의 面積(建築法上의 建蔽率에 의하여 算定한 面積)이 建築物을 建築할 수 있는 土地面積의 1/7에 未達하는 경우  
工場用地의 경우 地方稅法 施行令 第 84條의 4에 의한 基準工場 面積率을 基準으로 한다.

### △調査 除外土地

#### • 顯在 利用中인 土地

① 調査日 現在 2年 이상 農作物·苗木· 관상수 등을 植栽하여 왔거나 畜產·酪農 등에 제공된 土地  
다만, 住居地域內에서 農業에 제공되는 토지 등과 같이 지가 및 周邊地域의 土地利用狀況에 비추어 正常의이고도 적법한 土地利用으로 볼 수 없는 低利用되는 土地는 除外한다.

② 調査日 現在 2年 이상 繼續하여 벽돌·기와·철골·창호제품 등 住宅資材와 石物 등의 제조장으로 사용하고 있는 土地

#### ③ 駐車場에 提供된 土地

駐車場法에 의한 허가를 받았거나, 신고를 하고 설치한 路外 駐車場 주차장법에 의하여 설치한 건축물 부설주차장 및 주차장시설을 갖추어야 할 건축물 또는 垂地로부터 직선거리 200m 이내에 있는 당해 建築物의 專用駐車場

④ 關係法令에 의하여 事業의 認許可를 받은 者의 事業用으로 提供되는 土地

④ 關係法令에 의하여 事業의 認許可를 받은 者의 事業用으로 提供되는 土地

自動車運輸事業法, 重機管理法의  
規定에 의하여 免許 또는 許可를  
받은 자가 그 條件에 適合하게 使  
用하는 駐車場 및 車庫用 土地 등

#### ⑤ 體育施設用 土地

國民體育進興法에 의하여 운동경기  
부를 설치한 企業 또는 團體가 계  
속하여 선수전용에 使用하고 있는  
體育 施設用 土地

調查日 現在 2年 以上 계속하고  
있는 테니스장, 다만 地價 및 周邊  
地域의 土地利用狀況에 비추어 正  
常的인 土地利用이라고 볼 수 없는  
低利用되는 土地는 제외한다.

#### 利用·開發이 制限된 土地

- ① 都市計劃法에 의하여 都市計劃施  
設로 決定된 土地
- ② 土地收用法에 의한 公益事業에 使  
用되거나 使用이 豫定된 土地
- ③ 關係法令에 의하여 建築 또는 使  
用이 制限되거나 禁止된 土地
- ④ 土地의 位置나 形狀으로 보아 技  
術的·經濟的인 면에서 建築 또는  
使用이 適合하지 못하다고 管轄市  
長·郡守 또는 區廳長이 認定한 土  
地

土地所有者가 2年 以上 特定用途에  
사용하기 위하여 行政機關으로부터  
許可·認可·承認·指定 또는 決定을 받

아 당해 용도에 계속 使用中인 土地

#### • 訴訟 繫留中인 土地

所有權에 관한 訴訟이 장기간 繫留中  
인 土地로서 법원에 의하여 處分·使  
用 또는 出入이 制限 또는 禁止된 土  
地

#### • 分讓을 위하여 造成한 土地

都市計劃法에 의한 일단의 住宅地造  
成事業 및 일단의 工業用地造成事業  
의 施行許可, 土地의 形質變更許可  
또는 住宅建設促進法에 의한 垈地造  
成 承認을 받아 分讓코자 造成하고  
있거나, 造成이 完了된 分讓前의 垈  
地로서 竣工檢查日로부터 2年 未經  
過된 土地

#### • 豫備軍 訓練場用 土地

內務部長官이 정하는 施設基準과 面  
積에 적합한 豫備軍訓練場用 土地

### 5. 土地所有者 및 保有期間 確認

#### △土地所有者

##### • 個人

##### • 法人

① 非營利法人: 民法 第32條에 의하  
여 確立된 法人이 保有中인 土地

② 營利法人: 商法 第169條에 의하  
여 設立된 法人이 保有中인 土地

##### • 調查 除外土地: 國·共有土地 등

- ① 國家 所有土地
- ② 地方自治團體 所有土地
- ③ 貞婦投資機關 所有土地  
政府投資機關管理基本法 第2條의  
規定에 의한 政府投資機關 所有土  
地
- ④ 公共團體 所有土地  
公共團體가 固有의 目的에 直接 使  
用하기 위하여 取得·所有중인 土地

#### 公共團體

- ① 山林法에 의한 山林契·山林組合 및  
山林組合聯合會
- ② 農村近代化促進法에 의한 農地改良  
組合 및 農地改良組合聯合會
- ③ 農業協同組合法에 의한 農業協同組  
合 및 農業協同組合中央會
- ④ 水產業協同組合法에 의한 水產業協同  
組合 및 水產業協同組合中央會
- ⑤ 畜產業協同組合法에 의한 畜產業協  
同組合 및 畜產業協同組合中央會
- ⑥ 中小企業進興法에 의한 中小企業進  
興公團

#### △保有期間

- 當該 土地를 取得하거나 權利를 설정  
한 후, 그 期間이 調查日 現在 2年이  
經過된 경우
- ① 期間要件의 該當與否를 判斷하는

基準日은 當該 土地에 대한 調査日  
로 한다.

- ② 權利를 設定한 후 2年이 經過된  
경우

#### 權利의 取得 및 設定時點

權利를 取得 및 設定時點이 確認 불  
가능한 土地는 登記時點으로부터 起算  
하며, 權利의 取得 및 設定時點이 確認  
가능하는 土地는 實質的인 權利의 取得  
및 設定時點으로부터 加산한다.

#### 最初 起算日

- 契約에 의한 取得 또는 權利의 設定  
의 境遇에는 契約의 效力이 發生하여  
事實上 權利를 取得하거나 設定한 날
- 土地區劃整理事業으로 인한 換地는  
換地處分 公告日
- 農地改良事業으로 인한 換地 換地計  
劃認可告示日의 翌日
- 公有獸面埋立地는 竣工認可日
- 疾川數地는 交換 또는 讓與處分日
- 國家·地方自治團體 및 政府投資機關  
으로부터 分양받은 토지는 分讓契約  
日. 다만, 分讓時 貸金完納日 條件으  
로 權利行事 또는 土地利用을 할 수  
있는 조건부 계약 또는 特약을 한 경  
우에는 代金完納日

③ 수차에 걸쳐 일단의 土地를 取得한 경우에는 그 面積要件이 충족된 때를 時點으로 하여 취득한 것으로 본다.

④ 權利의 包括承繼(合併·相續 등)가 있는 경우에는 包括承繼 以前의期間을 合算한다.

※ 遊休地는 成立期間이 短期(2年)이므로 다른 要件이 충족된다면 次期調査時는 遊休地對象이 되므로 期間이 완성되지 않는 土地라도 일단調査를 進行하였다며 조사표에 이를 정확히 기재하여 次期調査時에 활용한다.

### III. 調査方法

#### 1. 調査班 編成

##### △ 實務調查班

- 該當 市·郡·區 單位로 編成하여 機能別로 分擔하여 調査를 實施한다.

##### △ 確認調查班

- 實務調查班 調査結果의 確認 및 漏落與否를 点檢하기 위하여 構成하며, 市·道와 市·郡·區 合洞으로 편성한다.

#### 2. 調査方法

##### △ 調査對象地域選定表의 作成

- 國土利用計劃, 都市計劃, 其他土地移用計劃上 開發·利用을 促進할 必要性이 있는 地域을 導出하기 위하여 調査對象地域選定表(別紙 1號書式)를 作成한다.

- 調査對象地域選定表는 市·郡·區別로 作成하며, 市·道知事은 이를 聚合하여 總括表를 作成하여야 한다.

##### △ 遊休地概況調查表의 作成

- 一定面積 以上의 일단의 土地로 抽出된 土地에 관한 事項을 遊休地 概況調查表(別紙 2號書式)에 기재하여 次期調査時에 期間完了與否 등을 檢討할 수 있게 한다.

##### △ 遊休地 調査表의 作成

- 遊休地 概況調查表에 기재된 土地 중 遊休地要件에 해당되는 土地는 遊休地調查表(別紙 第3號 書式)에 記錄하여 카드화하여 備置한다.

#### 3. 調査事項

##### △ 現地調査

- 土地所有者
- 土地의 地番
- 法庭地目 및 現實指目

- 面積
- 所有權 및 土地의 使用·受益權의 取得年月日

提出하여야 한다.

#### △土地理容計劃 調査

- 國土利用計劃
- 都市計劃
- 其他 土地의 利用에 관한 計劃

#### △公簿確認

- 登記簿(土地·建物) 열람
- 地籍圖 및 土地臺帳·林野圈 및 林野臺帳 열람
- 認·許可, 承認 等의 確認

#### 4. 所有者의 自進申告

△市長, 郡守, 區廳長은 管轄區域에 遊休地의 要件에 해당되는 토지가 있을 때에는 土地所有者로 하여금 自進申告하게 할 수 있다.

△土地所有者가 自進申告를 하는 경우 遊休地自進申告書(別紙 第4號書式)에 의하여 作成 제출토록 한다.

△申告는 當該 토지의 所有者 또는 代理人이 한다.

△所有者 1人이 일단의 土地를 行政區域을 달리하여 각각 所有하고 있는 경우에는 일단의 土地別로 申告書를 作成·

## IV. 遊休地 指定 節次

### 1. 遊休地 決定 豫定通知

△市長, 郡守, 區廳長의 調査結果 遊休地要件에 해당되는 土地가 있을 경우에는 市·道知事는 당해 土地의 所有者 및 土地權者에게 通知하여야 한다.

△通知는 「遊休地決定豫定通知書」에 의하나 權利者의 所在地를 알 수 없거나 通知를 할 수 없는 상황일 때에는 公示送達로 갈음할 수 있다.

### 2. 土地所有者의 意見提出

△遊休地決定通知書를 받은 土地所有者は 通知받은 内容에 대하여 意見이 있을 때에는 통지받은 날로부터 1月 以内에 道知事에게 書面으로 意見을 提出할 수 있다.

△市·道知事는 土地所有者가 意見을 提出하였을 때에는 正當性 與否를 檢討하여야 한다.

△市·道知事는 土地所有者가 제출한 의견과 이에 대한 檢討意見을 國土利用計劃審議會 審議案件에 별도로添附하여야

한다.

### 3. 國土利用計劃審議會 審議

△市·道知事が 遊休地決定을 하기 위해서는 事前に 國土利用計劃審議會의 審議를 거쳐야 한다.

△市·道知사는 國土利用審議會의 審議를 위하여 다음의 자료를添附한 30부를建設部長官에게 提出하여야 한다.

- 遊休地 總括表(別紙 第5號 書式)
- 遊休地 調查表(別紙 第3號 書式) 寫本
- 遊休地 位置圖(縮尺 25,000분의 1 地形圖)

- 區域圖(縮尺 5,000분의 1 지변약도에 당해 遊休地의 形狀을 明確히 표시한 것)

## V. 遊休地 調查結果 報告

市·道知사는 遊休地 調査結果 및 遊休地 決定通知 實績을 매년도 말 기준으로 翌年度 1月 31日까지 別紙 第6號書式에 의하여 建設部長官에게 報告하여야 한다.

[별지 1호 서식]

조사대상지역선정표

지역	토지이용에 관한 계획			조사대상 제외지역			조사대상지역	
	계획명① (지구명)	대상지역 ②	면적 (千m <sup>2</sup> )③	대상지역 ②	면적 (千m <sup>2</sup> )③	사유 ④	대상지역 ②	면적 (千m <sup>2</sup> )③
계								
도시지역								
도시지역외								

\* 작성요령

- ①「계획명」란에는 관계법령의 법정절차를 거쳐 수립·공고·고시된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의 명칭을 기재하며, 그 계획에 의하여 지구·지역·구역이 지정된 경우에는 ( )안에 기재한다.
- ②「대상지역」란에는 리·동까지 기재한다.
- ④「사유」란에는 유휴지 조사요령에 의하여 조사대상지역에서 제외되는 사유를 간단히 기재한다.

[별지 2호 서식]

유 휴 지 개 황 조 사 표

조사년월일 \_\_\_\_\_

조사기관 \_\_\_\_\_

조사자 직위 \_\_\_\_\_ 성명 \_\_\_\_\_ ①

확인자 직위 \_\_\_\_\_ 성명 \_\_\_\_\_ ②

1. 지역 \_\_\_\_\_

2. 토지소재지

가. 지번 \_\_\_\_\_

나. 지목

• 법정지목 \_\_\_\_\_

• 현실지목 \_\_\_\_\_

다. 면적 \_\_\_\_\_ (m<sup>2</sup>)

라. 필지수 \_\_\_\_\_ 필지

3. 소유자

가. 주소 \_\_\_\_\_

나. 성명(상호) \_\_\_\_\_ 전화 \_\_\_\_\_

다. 주민등록번호 \_\_\_\_\_

4. 기타권리자

가. 권리의 종류 \_\_\_\_\_

나. 주소 \_\_\_\_\_

다. 성명(상호) \_\_\_\_\_ 전화 \_\_\_\_\_

## 5. 유휴지요건

조사 항 목		조사 내용
요건	세항	
1. 개발이용촉진 필요성	가. 국토이용계획  나. 도시계획  다. 기타토지이용에 관한 계획	(1) 용도지역 ( (2) 세분된 용도지역 ( (1) 지역 ( (2) 지구 ( (1) 계획 ( (2) 지역, 지구, 구역 ( (3) 국가·지방자치단체의 계획 ① 집행기관 ( ② 계획 (  2. 면적
		(1) 일단의 토지면적 ( (2) 미이용면적 ( (3) 저이용면적 ( m <sup>2</sup> ) m <sup>2</sup> ) m <sup>2</sup> )

조사항목		조사내용
요건	세항	
3. 보유기간	가. 소유권  나. 기타의 권리	(1) 취득년월일 ( )  (2) 해당사유 ( )  (1) 권리의 종류 ( )  (2) 권리설정년월일 ( )
4. 토지이용도	가. 미이용지  나. 저이용지	(1) 용도지정 ① 주변지역의 통상적인 용도 ( ) ② 주변지역과의 비교 • 이 용 ( ) • 미이용 ( )  (2) 용도지정 ① 용 도 ( ) ② 용도에 따른 이용여부 • 이 용 ( ) • 미이용 ( )  (1) 건축물의 구조·공법 • 정 상 ( ) • 가 설 ( ) • 일시적 사용 ( ) • 기 타( )

조사 항 목		조사 내용
요 건	세 항	
	<p>(2) 주변지역과의 토지이용도 비교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정 상 ( )</li> <li>• 현저히 열세 ( )</li> </ul> <p>(3) 공작물</p> <p>① 정비상황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정 상 ( )</li> <li>• 열 세 ( )</li> <li>• 현저히 열세 ( )</li> </ul> <p>(4) 지상정착물</p> <p>( )</p> <p>① 사용상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정 상 ( )</li> <li>• 열 세 ( )</li> <li>• 현저히 열세 ( )</li> </ul> <p>② 관리상태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li>• 정 상 ( )</li> <li>• 열 세 ( )</li> <li>• 현저히 열세 ( )</li> </ul> <p>다. 지상정착물과 토지와의 비율</p> <p>(1) 도시계획구역</p> <p>① 토지면적</p> <p>( m<sup>2</sup>)</p> <p>② 지상정착물 면적</p> <p>( m<sup>2</sup>)</p> <p>③ 건폐율에 따른 건축가능면적</p> <p>( m<sup>2</sup>)</p>	

조사 항 목		조사 내용
요 건	세 항	
		<p>④ ①과 ②의 비율        • 1/7 이상 ( )        • 1/7 이하 ( )</p> <p>(2) 도시계획구역외</p> <p>① 공장지역        가) 기준공장면적율 ( )        나) 전체면적 ( m<sup>2</sup>)        다) 시설면적 ( m<sup>2</sup>)        ○ 기준공장면적율과의 비교        • 기준공장 면적율 이상 ( )        • 기준공장 면적율 이하 ( )</p> <p>② 건폐율        가) 토지면적        ( m<sup>2</sup>)        나) 지상정착물 면적        ( m<sup>2</sup>)        다) 건폐율에 따른 건축가능면적        ( )        라) 가), 나)의 비율        ○ 1/7 이상 ( )        ○ 1/7 이하 ( )</p> <p>③ 기타 ( )</p>

※ ( )안에는 그 내용이나 숫자 또는 ○표를 표시할 것.

[별지 3호 서식]

유 휴 지 조 사 표

①지 역	②토 지 소 재 지			③토 지 소 유 자			④기 타 권 리 자		
	지 번	지 목	필지수	주 소	성 명	주민등록번호	권리의 종류	주 소	성 명
⑤ 소유형태	(㎡)	⑦ 보 유 기 간			⑧ 토지이용도		⑨ 개발이용촉진필요성		
개인 또는 법인		단독 또는 공동	권리의 종 류	취 득	취 득	미이용	저이용	용도지역	법령상
		년월일	기 간	지	지	지 구	계 획		
⑩ 공공기관	⑪ 종 합 판 단			⑫ 계 속 검 토	조사년월일		토지이용변화	종 합 전 단	
매수희망	결 론	결정일	이 유					결 론	결정임

〈작성요령〉

- ①「지역」, ②「토지소재지」, ③「토지소유권」, ④「기타권리자」, ⑤「소유형태」, ⑥「면적요건」, ⑦ 「기간요건」, ⑨「개발이용 촉진 필요성」란은 유휴지 개황조사에서 이기한다.
- ⑧「토지이용요건」란은 유휴지 요건중 미이용지 또는 저이용지의 요건 중 해당사항을 기재한다.
- ⑩「공공기관매수희망」란은 공공기관이 해당토지에 대한 매수를 희망할 경우 매수희망기관·시기·매수목적 등 내용을 기재한다.
- ⑪「종합판단」란은 이상의 검토 결과를 토대로 유휴지결정예정통지 대상의 가부에 대한 판단 결과를 기재하며, 가(可)의 경우에는 “○”, 부(否)의 경우에는 “×”, 계속 검토를 요하는 토지의 경우에는 “△”로 표시한다.
- ⑫「계속검토」란은 ⑪란에서 계속검토를 요하는 토지에 대하여 다음 조사를 행할 때 기재하는 란이다.

[별지 4호 서식]

### 유 휴 지 자 진 신 고 서

소 유자	①주 소 ②성 명							
④소재지	⑤지 번	⑥용도지역지구명	⑦지 목	⑧면적(m <sup>2</sup> )	⑨취 득		⑩기 타	
					등기년월일	가 액		
			( )			( )		
공작물에 관한 사항	⑪종 류	⑫면 적 (m <sup>2</sup> )			⑬이 용 상 황			
		바닥 (연면적 )						
⑭토지의 이용상황								
⑮현재까지 미이용된 사유								

위와 같이 본인 소유 유 휴지를 신고합니다.

199.

신고인

㊂

귀하

#### **<작성요령>**

\* 우측 상단의 번호란은 기재하지 말것(읍·면·동·장이 기재함).

①②③란에 법인인 경우에는 그 법인의 주소, 명칭 및 대표자 성명·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함.

④~⑤란과 관련 일단의 토지가 수개의 지번(필지)로 이루어졌을 경우 ④~⑤란에 각각 구분하여 기재함.

⑥란에는 당해 토지의 토지이용 계획·도시계획 기타 토지이용에 관한 계획상의 용도지역 또는 지구명을 기재함.

⑦란에는 법정 지목을 기재하고 현실과목을 ( )에 기재함.

⑨「가액」란에는 신고일까지의 당해 토지의 취득, 관리에 소요된 비용액의 원리금을 합산한 금액을 기재하되 ( )에 그 내역을 각각 구분하여 기재함.

⑩란에는 기업의 비업무용토지 또는 공한지일 경우 이를 기재하고 기타 참고사항을 기재함.

⑪란은 건물(목조, 콘크리트조 등 구분) 구축물, 지하매설물, 구조물, 설비, 분묘, 임목 등으로 기재함.

⑬란에는 당해 공작물 등의 용도, 이용실태 등을 기재함.

⑭란에는 당해 토지의 현재의 이용상황을 기재함.

⑯란에는 취득일로부터 신고일까지 유 휴상태로 두어야 했던 사유를 기재함.

**취득관리비 조견표**

1985. 4. 현재

과세표준액	등록세		취득세	방위세		증 가 수수료	사법서사 수 료	인지대		소유권 이전		지상권 설정	
	농지	기타		농지	기타			이전	지상권	농지	기타	농지	기타
1천만원 미만	10	30	20	2	6	7	2.23	1	0.65	42.23	66.23	41.88	65.88
1천만원 이상 3천만원 미만	10	30	20	2	6	6	0.96	0.9	0.6	39.86	66.23	39.56	62.93
3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	10	30	20	2	6	5	0.70	0.8	0.5	38.50	62.50	38.20	62.20
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	10	30	20	2	6	4	0.51	0.75	0.45	37.21	61.51	36.96	60.96
1억원 이상 2억원 미만	10	30	20	2	6	3	0.42	0.75	0.5	36.17	60.17	35.92	59.92
2억원 이상 8억원 미만	10	30	20	2	6	2	0.34	0.75	0.13	35.09	59.09	34.47	58.47
8억원 이상	10	30	20	2	6	1.5	0.34		0.13	34.59	58.59	33.97	57.97

\* 1,000분율

서울특별시 시적과

[별지 5호 서식]

유 휴 지 총 팔 표

시 군	유 휴 지 조 사			유 휴 지 결정 예정 통지		국토이용계획심의회 심의대상토지	
	조사기간	건	천 m <sup>2</sup>	건	천 m <sup>2</sup>	건	천 m <sup>2</sup>
계							

[별지 6호 서식]

유휴지 조사결과 및 유휴지 결정통지실적보고서

시 군	유 휴 지 조 사			유휴지결정예정통지		유휴지결정통지실적	
	조사기간	건	천 m <sup>2</sup>	건	천 m <sup>2</sup>	건	천 m <sup>2</sup>
계							